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8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송옥주·정성호·이병진

박홍배 • 한정애 • 문진석

이재관 • 박 정 • 부승찬

이수진 • 박해철 • 전용기

이해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 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서 조사보고서의 작성 · 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발생 개요 · 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산업재해는 해당 사업장은 물론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조사보고서의 비공

개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 규명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칠 우려도 있음.

이에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출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등).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이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 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내용 및 절차"를 "내용・절차 및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로 한 다.

- 1. 개요
- 2. 사실정보
- 3. 원인분석
- 4. 사고조사결과
- 5. 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사항
-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3개월 내에 공표하여야 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재해 조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	
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	
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하고, 다음
	고서(이하 "중대재해 조사보고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
	다.
<신 설>	<u>.</u> 1. 개요
<u> </u>	 2. 사실정보
<u><신 설></u>	<u>3</u> . 원인분석
<u><신 설></u>	<u>4. 사고조사결과</u>
<u> <신 설></u>	5. 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사항
<u> <신 설></u>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u><신 설></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
	고서를 3개월 내에 공표하여야
	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u>②</u> · <u>③</u> (생 략)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u>⑤</u>

에	다	한	원인결	조사의	내용	및
<u>절</u> 기	<u></u> ,	ユ	밖에	필요한	· 사형	당은
고	<u>용</u> 노	ː동-	부렁으	로 정힌	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 8. (생략)

<u>내용</u>
•절차 및 중대재해 조사보고
<u>서의 작성·제출</u>
·.
제170조(벌칙)
1. (현행과 같음)
2. <u>제56조제4항</u>
3. ~ 8. (현행과 같음)